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2173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21731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97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이희숙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애숙

변론종결 2021. 6. 17.

판결선고 2021. 12. 2.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97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1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박창우, 판사 김한철